

의안번호	2210783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 계 번호	25F315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현행 기술별 시설투자와 구분하여 공제율을 인상 - 공제율(%): 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 기준 중소 12, 중견 6~9, 대 3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30, 중견 20~30*, 대 20 ※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은 30%의 공제율 적용 - 적용기한: 2029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현행 기술별 시설투자와 구분하여 공제율을 인상하는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)

- 개정안은 현행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되어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분하여 공제율을 인상
 - 개정안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)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

[표 1] 신·재생에너지 기술 개요

	정의	종류
신에너지 (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)	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	수소에너지, 연료전지,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
재생에너지 (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)	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	태양에너지, 풍력, 수력, 해양에너지, 지열 에너지,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, 폐기물에너지 등

- 개정안은 신·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현행 기술별 투자와 구분하여 20~30%의 공제율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2]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·기업규모별 공제율 비교

(단위: %)

	현행				개정안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	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	반도체기술 사업화시설 등	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
중소기업	10	12	25	30	30
중견기업	5~7.5 ¹⁾	6~9 ¹⁾	15~20 ¹⁾	20~25 ¹⁾	20~30 ¹⁾
대기업	1	3	15	20	20

주: 1)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공제율을 우대 적용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규정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규정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제율이 인상되는 투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현행 신·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 중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설이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3]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에 포함되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범위

분야	분야 (세부분야)	내용
탄소중립	신·재생 에너지	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 등 설계 및 제조 기술,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, 페로브스카이트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,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,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, 발전 기술,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, 폐기물 액화·가스화 기술, 미활용 폐열을 활용한 발전기술 등

- 또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시설 및 구축물에 대한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투자 규모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(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) 구분은 가능하나, 신재생에너지 등 세부적인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 - － 참고로, 2023년 신고기준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신성장·원천기술 38억원, 국가전략기술 7,432억원 수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